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정 : 2022.02.16

개정 : 2023.1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 「학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현장 적응력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 (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우리대학 현장실습학기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과 교육부 고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과 같이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제4조(운영)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과 및 부서 등에서는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제5조(현장실습생)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복학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이 유보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학기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육부 고시 및 이 내규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6조(운영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 :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

로 활용한다.

3. 본 대학교 :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 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8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환경·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한다.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하며, 서면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⑧ 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절차)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가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1조(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황에 따라 센터장과 실습기관의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필요에 따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④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 협약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기관명(장소) 및 실습기간
2. 휴게일(휴일) 및 실습지원비 등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출석 및 평가
4.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5.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측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본 대학교 측에 알리고 본 대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관리) ① 본 대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및 제15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제15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정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적용 시 채택실습은 실습기간 (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의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③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5조(학생 보호 등) ①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본 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과 학생 및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⑧ 제14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정계 및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 대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본 대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16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8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1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19조(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과 달리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6조의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17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0조(실습지원비 미지급형태의 운영기준) 미지급형태의 운영 기준 ①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본 대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한다.

④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한다.

⑤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⑥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⑦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⑧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본 대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한다.

⑨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1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복교에 따른 중단 시 대학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재택실습)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③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에서는 재택실습 실시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격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①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교육, 교내이론 또는 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학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현장실습학기제 평가

제24조(학생지도 및 성적부여)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 관리교수를 선임한다. 관리교수는 해당기업을 발굴한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수업에 참가한 학생에 대하여 최소 1회 방문 지도를 하여야 하며, 방문지도 시 방문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는 현장지도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원거리 국내현장실습의 경우 이에 준하는 방법(E-mail, 유선통화 등)으로 학생지도를 실시한다.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참여 학생의 (본교 서식) 별지 제3호 현장실습 결과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체 실습기간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학기제 평가표(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기관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Pass)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실격(Non-Pass) 처리한다.

⑥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평가서 검토 후 현장실습 성적부여자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3.10.16.>

제25조(현장실습 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한 기간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기간 내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재학 중인 자
2. 해당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상실습이 있는 의료·보건계열, 사회복지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하며 자격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실습은 인정할 수 있다.

1. 휴학자 등. 다만, 휴학자의 경우 실습기간 종료일 이전 복학예정자는 예외로 하며, 복학 미이행시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학생 등

제26조(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한 기간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기간내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만족도조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이를 차기 현장실습학기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정의 해석) 현장실습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교 서식) 서식 제2호 현장실습학기제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습업체 동의와 지도교수 승인을 거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무위반자 조치) 현장실습 수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2. 고의적으로 실습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생의 신문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현장실습 수업 결과 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준용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육부 고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3]

현장실습 결과 평가서(지도교수)

실 습 생 소 속					
실 습 생 성 명		실 습 생 학 번			
실 습 업 체 명			근 무 부 서		
실 습 기 간	~				
평 가 서 류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 도 평 가	50	40	30	20	10
현장실습주간일지 평가	50	40	30	20	10
합 계	현장실습평가서(실습관리자) + 지도평가 + 현장실습 주간일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현장실습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지도교수 : (인)</p>					

대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4]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 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무실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형태 <input type="checkbox"/>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무실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형태 <input type="checkbox"/>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input type="checkbox"/>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input type="checkbox"/>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input type="checkbox"/> 모든 필요 물품 및 비용을 제공한다. <input type="checkbox"/>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_____) <input type="checkbox"/>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취급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제공된다. <input type="checkbox"/>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서식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 기본 정보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1주 기준 : []시간
	정규 근로일수	1주 : []일 / 근로요일 :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회(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대원대학교 귀중

[서식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과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00학과 1명, 000학과 1명 또는 000학과/000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서식 6]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___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__학년도 __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____년 월 일부부터 ____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_시간 / __ : __ ~ __ : __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____원(세전)을 [당월/익월] _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____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기입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원대학교 총장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실습기관명 기입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대원대학교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서식 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___시간)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시간)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시간)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___%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서식 8]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60
	업무숙지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과정)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결과)수준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혁신/창의성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소통/표현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0
	책임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대인관계/협업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업무절차/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언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대원대학교 귀중

[서식 8]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년도	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작성방법	
■ 년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년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로 나와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나오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년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서식 9]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 기본 정보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1주 기준 : []시간	
	정규 근로일수	주 : []일 / 근로요일 :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	붙임 1.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

기타사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참여 의뢰(기관추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 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대원대학교 귀중

[서식 9]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과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재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지급 여부	▪ 지급 []	▪ 미지급 [] ※ 미지급일 경우 경미한 업무도 진행 불가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직무개요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운영 / 지도 계획	* * *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00학과 1명, 000학과 1명 또는 000학과/000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요구 역량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서식 1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___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__학년도 __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_____년 월 일부터 _____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_시간 / __ : __ ~ __ : __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실습지원비 미지급일 경우 조항 삭제]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_____원(세전)을 [당월/익월] _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_____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기입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 후 별지 제3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원대학교 총장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실습기관명 기입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대원대학교 OOOO학과 OO.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서식 1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___시간)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시간)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시간)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___%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서식 1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60
	업무숙지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과정)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결과)수준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혁신/창의성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소통/표현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0
	책임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대인관계/협업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업무절차/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언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대원대학교 귀중

[서식 1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년도	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작성방법

- 년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년도 기입
- 주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로 나와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나오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년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